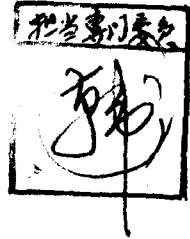


議案)

600-1



國會規則第 號

# 國會圖書館職制 (案)

第1條 (目的) 이 規則은 國會圖書館法第4條 및 第6條

規定에 의하여 國會圖書館의 分掌事務 및 公務員의 定

員과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~~下部組織~~ <sup>機構</sup>) 國會圖書館에 總務課·立法調查局 및

司書局을 둔다.

第3條 (總務課) ① 總務課長은 行政書記官으로 補한다.

② 總務課는 다음事項을 分掌한다.

1. 圖書館長印과 官印台帳의 管守에 관한 事項.

2. 公務員의 任用·服務·教育訓練·年金 기타 人事管理

에 관한 事項.

공백

3. 4級<sup>이하</sup>以下 公務員<sup>의</sup>轉職試驗 및 技能職公務員<sup>의</sup>採用·轉職  
試驗에 관한 事項.

4. 文書의 受發·統制·管理·保存에 관한 事項.

5. 製本 및 圖書카-드 印刷에 관한 事項.

6. 經理와 備品의 管理·物品購買·調達·檢收에 관한  
事項.

7. 館內<sup>내</sup> 他局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項.

③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總務課에 總務係·經  
理係 및 管理係를 두되<sup>며</sup> 經理係長은 財經事務官 또는  
行政事務官으로, 기타의 係長은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.

第4條 (立法調查局) ①立法調查局에 第1課·第2課·第3  
課 및 第4課를 둔다.

②局長은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으로, 課長은 行

공백

政書記官으로 補한다.

③ 第1課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.

1. 法劑司法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2. 外務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3. 內務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4. 國防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
④ 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第1課에 第1係·  
第2係·第3係 및 第4係를 두되 <sup>이</sup>係長은 行政事務官  
으로 補한다.

⑤ 第2課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.

1. 財政經濟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2. 農林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3. 商工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
공백

⑥前項의 事務를 分担하기 위하여 第2課에 第1係  
第2係 및 第3係를 두<sup>며</sup> 係長은 行政事務官으로 補한  
다.

⑦第3課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.

1. 建設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2. 交通遞信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3. 保健社會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

⑧前項의 事務를 分担하기<sup>위</sup>하여 第3課에 第1係·第  
2係 및 第3係를 두<sup>며</sup> 係長은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.

⑨第4課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.

1. 文教<sup>le</sup> 公報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2. 國會運營委員會 所管에 관한 事項.
3. 立法參考·研究·審議<sup>등</sup> 諸般資料의 蒐集·編纂 및

공백



發刊에 관한 事項.

4. 局內 他課의 主眼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項.

①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第4課에 第1係·第2係 및 第3係를 두되 係長은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.

第5條(司書局) ①司書局에 圖書課·閱覽課 및 國際交換課를 둔다.

②局長은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으로, 圖書課長·閱覽課長은 司書官으로, 國際交換課長은 司書官 또는 行政書記官으로 補한다.

③圖書課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.

1. 圖書館資料의 選採에 관한 事項.

2. 圖書의 購入 分類 및 目錄作成에 관한 事項.

3. 局內 他課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項.

공백

④ 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圖書課에 收書係·  
分類係 및 目錄係를 두되 係長은 司書官補로 補한다.

⑤ 閱覽課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.

1. 各種圖書 및 刊行物의 保存에 관한 事項.
2. 閱覽 및 貸出과 圖書의 案内에 관한 事項.
3. 藏書의 管理 및 參考業務에 관한 事項.

⑥ 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閱覽課에 參考係·  
藏書係 및 定刊係를 두되 係長은 司書官補로 補한다.

⑦ 國際交換課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.

1. 交換目錄의 作成에 관한 事項.
2. 交換用 政府刊行物 및 기타 出版物의 蒐集·發送에  
관한 事項.
3. 納入 및 交換과 寄贈에 의한 圖書館資料의 受收到  
관한 事項.

~8~

공백

4. 圖書通関에 관한 事項 .

5. 國際交換協定과 締結에 관한 事項 .

④前項의 事務를 分担하기 위하여 國際交換課에 國內  
係・國外係 및 整理係를 두되 整理係長은 司書官補로,  
기타의 係長은 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.

第6條 (定員) ①國會圖書館 ~~에 두는~~ 公務員의 定員은

다음과 같다.

圖書館長	1 人
秘書官	1 人
<u>5級이상</u> 一般職	81 人
技能職	17 人
雇傭職	16 人
計	116 人

②前項의 公務員의 局・課別定員과 職級은 議長이 國

~?~

~~01~~

공백

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<sup>경</sup>한다.

第7條 (委任規程) ① <sup>경</sup> 圖書館長은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圖書館管理上 <sup>필요한</sup> 諸規程을 <sup>경</sup> ~~할~~ 수 있다.

② 이 <sup>필</sup> 規定에 <sup>한</sup> 規定된 係別 事務分擔에 關하여 <sup>필요한</sup> 事項은 圖書館長이 <sup>경</sup> ~~한다~~.

附 則

<sup>경</sup> 이 規定은 1963年12月17日부터 適用한다.

~P~

공백